
Policy and Law Report _Vol.19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17.~7.23.) -

June 24,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7. 18)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7/17~7/23)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발표 -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한 바,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23년 150종 구축 → '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하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함. 또한,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8월~)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디지털 심화에 따른 향후 예상 쟁점(예시) > <table><tr><th>분 야</th><th>예상되는 쟁점</th></tr><tr><td rowspan="2">보건·의료</td><td>•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 허용 여부</td></tr><tr><td>•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td></tr><tr><td rowspan="3">사회·문화</td><td>•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가짜뉴스 대응</td></tr><tr><td>•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허용 여부, 범죄행위 대응</td></tr><tr><td>• AI 생성물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 이슈 검토</td></tr><tr><td rowspan="3">경제·노동</td><td>• 온라인 플랫폼社 - 노무제공자 간 관계 정립</td></tr><tr><td>•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 관련 제도 정비</td></tr><tr><td>• 자동화된 로봇의 법인격 여부 및 일자리 감소 우려</td></tr><tr><td>교통</td><td>•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td></tr></table> *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 등 지원을 위해 한국어·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제공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 (aihub.or.kr) ** EU·일본 등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 既도입 그리고 ①물류·유통, ②금융, ③안전, ④행정, ⑤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예정임 < 물류·유통 분야 > (버스정보)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	분 야	예상되는 쟁점	보건·의료	•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 허용 여부	•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사회·문화	•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가짜뉴스 대응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허용 여부, 범죄행위 대응	• AI 생성물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 이슈 검토	경제·노동	• 온라인 플랫폼社 - 노무제공자 간 관계 정립	•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 관련 제도 정비	• 자동화된 로봇의 법인격 여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교통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3-07-21
	분 야	예상되는 쟁점															
	보건·의료	•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 허용 여부															
		•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사회·문화	•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가짜뉴스 대응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허용 여부, 범죄행위 대응																	
• AI 생성물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 이슈 검토																	
경제·노동	• 온라인 플랫폼社 - 노무제공자 간 관계 정립																
	•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 관련 제도 정비																
	• 자동화된 로봇의 법인격 여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교통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처	내용	일시
	(맥주)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하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 (통관) 소비자가 해외직구 수과정을 One-Stop으로 조화·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포털·앱’ 개발 < 금융 분야 > (외국인 편의)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 (세금 환급)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단말기 보급)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페이(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 편의 제고 (투자일임)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예정 < 안전 분야 > (산업단지) 실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을 구현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 (철도)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 (식품 관리)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큐알(QR)코드에 반영하여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 < 행정 분야 > (법령) 일상어 기반 질의시 사용자 의도를 분석하여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통계) 쉽고 편리한 통계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초거대AI 통계챗봇’ 서비스* 시범구축 * 맞춤형 통계자료 추천, 자료 가공·시각화·분석 지원, 통계보고서 생성 등 · 제공하는 AI (인허가) 공장입지 선정,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인허가 모의심사 등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 개설 < 교육 분야 > (AI 디지털교과서) 에듀테크를 활용,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형교육 실현을 위해 AI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 (AI교육 선도학교) 학습공간 디지털화 및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AI·SW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부처	내용	일시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전략 핵심과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① 산업별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확대 ②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제고 및 안전성 강화 ③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명확화 디지털 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 ①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②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지원 및 가치평가 기반 자금 지원 초고속 통신망 확산 ① 제조·건설·물류·의료 등 수요기업 맞춤형 초고속 통신망 확산 ② 5G 전국망 구축 및 6G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디지털 가속화 쟁점 대응 ①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 ② 보고서(시험) 등에 대한 AI 활용 여부·범위 ③ 자율주행 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및 보상체계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① (물류·유통) 교통정보 제공, 온라인 주문 확대 ① 화물차 주차가능 공간 실시간 정보 제공 ②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 확대 ③ 드론배송시 별도 관찰자 배치 의무 완화 ④ 지역생산 보리 활용 수제맥주 스마트오더 판매 ⑤ 해외직구全过程 One-Stop 서비스 제공 ② (금융) 간편결제 및 AI 활용 투자 활성화 ① 동남아 간편결제와 제로페이간 제휴 확대 ② 간편결제 결제시 여권 스캔 없이 즉시환급 ③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③ (안전) 제조공정 혁신, 식품 안전 보장 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장·산업단지 안전관리 ② 철도·항만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식품안전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 ④ (행정) 법령·통계·인허가 정보 디지털화 ① 맞춤형 답변 가능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② 초거대AI 통계챗봇 서비스 시범구축 ③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 개설 ⑤ (교육) 디지털 교육서비스 활용 전면화 ① 에듀테크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②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 방안으로 바이오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이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함 * 바이오 경제 :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메커니즘) 이날 발표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은 크게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 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 등 4+1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통해 2030년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바이오경제2.0 실현을 위한 4+1 추진방향 글로벌 바이오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인력·수출 등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15.7조원 민간투자 (30) 바이오납사 국내 생산 20만톤 (30) RFS 비율 8%로 상향 (30) 디지털헬스 서비스 50건 상용화 (30) 바이오경제 2.0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 세부 내용으로는 1.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민간 15.7조원 투자 총력 지원 •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 부지, 전력, 상하수도 등 인프라 지원 • 바이오기업 성장 지원 * 글로벌 빅파마, VC 매칭 지원 등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10%(27), 15%(30) 달성 • 바이오 소부장 기술로드맵 수립 (23.下) • 바이오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23.下) • 글로벌 원부자재기업 투자유치 전담팀 운영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 지원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기술개발 추진 (메타 기획중) •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메타중) • 한국판 BioMADE 설립 추진 (메타 기획중)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 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 지원 * 예시 : (충남) K-NIBRT (충남) 3D 생체조직칩 실증센터 • 클러스터간 연계·협력 강화 2. 바이오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규제, 인증 등을 통해 시장창출 • 국내외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지원 • 생분해성 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 연장 추진 • 바이오신소재 규제발굴 및 논의 다양한 바이오신소재 제품 개발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기반 마련 • 친환경 섬유 R&D 메타 추진 • 바이오식품 기술개발 지원 추진 바이오신소재 원료 기술 개발 • 바이오납사 고수율 생산기술 개발 • 석유기반 대체 바이오화합물 생산기술 개발 → 바이오납사 연 20만톤 국내 생산 (30) 2023-07-19	

부처	내용	일시
	3.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를 상용화하겠습니다 신규 바이오연료 실증 -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23.~') - 수첨바이오디젤 실증연구 ('23~'25) '30년 RFS 의무비율 : 5% → 8% 법령 정비 및 표준 개발 지원 -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 ('23) - 바이오연료 산업의 자원·육성,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 바이오제품 생산 등 근거 마련 - 국가-국제 표준 개발 ('23~'26) 안정적 원료확보 지원 - 국내외현황심층조사('23.~) 및 업계 지원방안 마련 -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예타 추진 4. AI, ICT 융합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100만명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도 제고 ('24~'32) -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빅데이터 개발 → 민간에 공유 - 글로벌 바이오데이터 허브화 추진 타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기술융합형 제품화 성공사례 50건 이상 창출 반도체 예시 : 생체신호 모니터링 패치 디스플레이 예시 : OLED 기반 바이오센서 나노 예시 :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배양 플랫폼 5.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킬러 규제 발굴 및 해소 - 현장으로 상시 해소 - 찾아가는 지역 카리반,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 -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 - 미국·일본과 같이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을 밀폐생산공정 이용시 위해성심사 간소화 추진 - 제도공백에 따른 시장형성 지체 해소 * 예시 :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등 디지털의료 제품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 현장수요맞춤형 - K-NIBRT('24 완공),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25 완공) - 산학융합형 -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유치 바이오통출 활성화 - 해외인증지원단 신설 ('23, 국표원) - 코트라 무역관내 K-바이오 데스크 설치 ('24~) - 무역금융('23, 360조원) 공급 및 활용 지원 - 바이오경제 동반자 협정(BEPA) 추진 - 미국, UAE 등 정상외교 성과 활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임	2023-07-17

부처	내용		일시																																					
	<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8개) > <table><tr><th>연번</th><th>과제명</th><th>정비내용</th><th>조치사항</th></tr><tr><td>1</td><td>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td><td> 기존 교통카드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되므로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 발급 불가 ※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으로 구분 개선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 (~25년)</td><td>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행복이음 개선</td></tr><tr><td>2</td><td>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td><td> 기존 장사법 이행강제금 부과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과도한 국민의 권익 침해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 기간 설정하는 장사법 일부 개정 추진 (~'24.하반기)</td><td>장사법 개정</td></tr><tr><td>3</td><td>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td><td> 기존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의 유골의 처리 기간(5년)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는 기간이 상이하여 지자체에서 장기간 봉안하는 부담 작용하므로 일원화 건의 개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장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24.하반기)</td><td>장사법 시행령 개정</td></tr><tr><td>4</td><td>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td><td> 기존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불가 개선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를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td><td>발달장애인법 개정</td></tr><tr><td>5</td><td>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td><td> 기존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개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도 포함</td><td>발달장애인법 개정</td></tr><tr><td>6</td><td>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td><td> 기존 미용업소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하나, 혈액이 묻은 타올·도포류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타올 교체 비용 과다 소요 개선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포류는 폐기하거나, 재사용 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23. 下)</td><td>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td></tr><tr><td>7</td><td>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td><td> 기존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있더라도 손씻기시설을 별도로 설치 개선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td><td>의료법 시행규칙 개정</td></tr><tr><td>8</td><td>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td><td> 기존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개선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완화</td><td>장사법 시행령 개정</td></tr></table>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기존 교통카드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되므로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 발급 불가 ※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으로 구분 개선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 (~25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행복이음 개선	2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기존 장사법 이행강제금 부과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과도한 국민의 권익 침해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 기간 설정하는 장사법 일부 개정 추진 (~'24.하반기)	장사법 개정	3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기존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의 유골의 처리 기간(5년)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는 기간이 상이하여 지자체에서 장기간 봉안하는 부담 작용하므로 일원화 건의 개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장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24.하반기)	장사법 시행령 개정	4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기존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불가 개선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를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법 개정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존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개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도 포함	발달장애인법 개정	6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기존 미용업소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하나, 혈액이 묻은 타올·도포류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타올 교체 비용 과다 소요 개선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포류는 폐기하거나, 재사용 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23. 下)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7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기존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있더라도 손씻기시설을 별도로 설치 개선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8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기존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개선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완화	장사법 시행령 개정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기존 교통카드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되므로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 발급 불가 ※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으로 구분 개선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 (~25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행복이음 개선																																					
2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기존 장사법 이행강제금 부과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과도한 국민의 권익 침해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 기간 설정하는 장사법 일부 개정 추진 (~'24.하반기)	장사법 개정																																					
3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기존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의 유골의 처리 기간(5년)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는 기간이 상이하여 지자체에서 장기간 봉안하는 부담 작용하므로 일원화 건의 개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장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24.하반기)	장사법 시행령 개정																																					
4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기존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불가 개선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를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법 개정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존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개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도 포함	발달장애인법 개정																																					
6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기존 미용업소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하나, 혈액이 묻은 타올·도포류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타올 교체 비용 과다 소요 개선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포류는 폐기하거나, 재사용 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23. 下)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7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기존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있더라도 손씻기시설을 별도로 설치 개선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8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기존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개선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완화	장사법 시행령 개정																																					

부처	내용	일시
금융위원회	•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규제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함 주요 안건으로는 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 -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되어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 -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 -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방안 ②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 - 추진 내용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③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이후 금융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 보고	2023-07-17
금융감독원	• 「은행(지주)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 운영 TF 구성을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 지원체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향후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중 T/F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외이사 지원체계)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 정비 ②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2023-07-14

부처	내용	일시
	③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등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확보 방안 및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④ (사외이사 평가체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사항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18. 시행)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대상에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의 지원·조정 등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본부를 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그 공동출자법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그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주식의 처분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9조 제6항제1호나목,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제2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등)	2023-07-18
국토 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18. 시행)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재 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등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등은 공익 또는 개발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승센터를 기반시설에 추가 (제2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기반시설에 추가함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50조의2제1호) -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23-07-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 (제85조제5항) – 종전에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금융 위원회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u>」 (2024.1.19. 시행 예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429조의2, 제442조의2 신설, 제448조의2 신설 등)	2023-07-18
	• 「<u>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u>」 (2024.1.19. 시행 예정. 다만,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에 지점·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조제2항, 제7조, 제10조의2제1항제4호, 제37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제3호 등)	2023-07-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 (2024.7.19. 시행 예정. 다만,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 (제2조) ②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제3조 및 제4조)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④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부터 제9조까지) 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및 제17조) ⑥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제11조 및 제12조) ⑦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⑧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 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⑩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22조)	2023-07-1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②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8조 및 부칙 제2조) ③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 (안 제43조 및 부칙 제3조) ④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안 제46조)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 (안 제47조의4 신설) ⑥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 (안 제50조제5호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7/17(월)~8/26(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	2023-07-17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기부행위 제한 규정 신설, 감독기관의 금고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11. 공포, 2023.10.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023-07-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고 임원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②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 (안 제5조의3 신설) ③ 감독기관의 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먼저 해당 금고·중앙회에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제재처분의 절차를 정함 (안 제11조의2 및 별표 1) ※ 의견 제시기간 : 2023/7/17(월)~8/26(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	
산업통상 자원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보험 등 가입 의무 부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 등 규정을 삭제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 이에 따라, 지능형 로봇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의 표시 및 홍보 방법,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등의 세부 규정,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로봇정책심의회 자문위원 의견 제출방식 (안 제4조제5항) - 자문위원의 의견 제출방식을 ‘서면 등’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함 ②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 세부사항 (안 제11조의2) -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을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함 ③ 지능형 로봇투자 세부사항 (안 제12조~제19조) -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조문(제20조~제29조의2)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2023-07-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 제24조의2) - 개정법률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⑤ 책임보험 등 가입 (안 제24조의3) - 개정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책임보험 등의 갱신 의무,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⑥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안 제31조의2) - 개정법률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취소사실 공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반납 의무 등을 규정함 ⑦ 과태료의 부과대상 개편 (안 제34조) - 개정법률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함 ※ 의견 제시기간 :2023/7/18(화)~8/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항공과)로 제출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 이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요건,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간, 변경인증, 안전인증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안 제7조의2) - 개정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수행체계 구축, 주요 시험설비 보유, 안전인증 수행인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23-07-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안 제7조의3) - 기관 등이 인증기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업무수행 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관 등이 인증기관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③ 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안 제7조의4) -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발급 시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함 ④ 안전인증 신청 등 (안 제7조의5) -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면, 부품 명세표,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 시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⑤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안 제7조의6) -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함 ⑥ 안전인증기준 (안 제7조의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⑦ 안전인증의 심사 등 (안 제7조의8) -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규정함 ⑧ 변경인증 (안 제7조의9) -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함 ⑨ 안전인증 표시 등 (안 제7조의10) - 안전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⑩ 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 (안 제7조의11) -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인증심사원 입회 및 신청인 동행, 서류심사 적합성,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한 경우에 임시운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⑪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 제7조의1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함 ⑫ 안전인증의 취소 등 (안 제7조의13) - 개정법률 제40조의3에서 규정한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사용 금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규정함 ⑬ 수수료 (안 제7조의14) -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 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2023/7/18(화)~8/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항공과)로 제출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안 제12조 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학분석·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하고 -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환경위해관리기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을 시행령에 포함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삭제) ※ 의견 제시기간 :2023/7/21(금)~9/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안전과)로 제출	2023-07-2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 (안 제14조 개정) - 금지물질 수입, 판매허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②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 (안 별표6 개정) -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2023-07-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 (안 별표6의2 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2023/7/21(금)~9/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안전과)로 제출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허위매물 광고 및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 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보증의 종류 (안 제13조의20),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 (안 제13조의21) 등 자동차매매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신설) ②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신설) ③ 보증의 종류 (안 제13조의20 신설) ④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 (안 제13조의21 신설) ※ 의견 제시기간 :2023/7/17(월)~8/26(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2023-07-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u>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한시 상향 추진 (안 제4조의3)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하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포함)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함 ※ 의견 제시기간 :2023/7/21(금)~8/1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	2023-07-21
식품 의약품 안전처	• 「<u>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 이에 따라,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불법 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법판매 알선·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규정, 불법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위탁 기관 규정 (안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4조의15) ②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를 협의하는 근거 마련 (안 제34조의9) ③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업무 위탁 기관 명시 (안 제35조)	2023-07-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2023/7/20(목)~8/2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발급하는 신고증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증 발급 신청 시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실하는 경우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온라인 재발급 절차 신설 (안 제8조제4항, 안 제11조제3항, 안 별지 제3호의2서식) -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신고증 분실 관련 절차 정비 등 (안 제9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때 기존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서식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함 ※ 의견 제시기간 :2023/7/19(수)~8/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로 제출	2023-07-1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법제사법위원회	• 「<u>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u>」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6개국에 출원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작년 9월에 동일한 이유로 특허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처분을 내렸음 이에 대해 특허청의 위 무효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6월 30일에 판결을 한 상황임. 만약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 됨 그러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등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향후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특허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도적 조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 특허법원과 유사한 법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CAFC), 독일(연방특허법원), 일본(지재고재) 등도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유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인공지능 사건에 대해 미국은 CAFC에서, 독일은 연방특허법원에서 판결하였음. 일본에서도 특허청장의 처분(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신고 각 하처분, 특허료 불납에 의한 절차 각하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사건을 지재고재가 관할하고 있음 덧붙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약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승인대상 여부, PCT 국제출원 시 자금지정 제외(대한민국을 국제출원 지정국에서 제외)한 경우 국내진입 단계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원부상 명의인은 아니나 실질적인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특허, 상표, 디자인 행정소송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례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제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화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023-07-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이 심판하도록 함 (안 제28조의4제3호 신설) ②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해 일반 고등법원 사건에서 제외함 (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인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었음에도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명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임 또한,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ID와 연락처 등만 알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명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이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도 통상 1 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하여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협박 범죄 유인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등) 또한, 간편송금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3항 신설)	2023-07-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판매계획, 광고, 제품수급, 판매금액 책정 등 사업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음. 반면 해당 가맹점의 영업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가맹점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도 가맹점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지금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이와 같은 구조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 노동자에 대한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 형성으로 이어짐. 이른바 ‘을과 병의 전쟁’의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형식적으로는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가맹본부 이익의 원천도 여기에 있음.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 간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안 제2조제10호나목 및 마목)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1년 3년)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제2호의2, 안 제5조의2, 안 제11조제2항제2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2023-07-21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드라마, 오락,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07-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제작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3%~10%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융합형 콘텐츠 제작으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K-콘텐츠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두어 3년 단위로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보다는 상시로 공제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페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고형(固形) 연료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으며 지역 주민간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음 이렇듯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별표 제96호 신설)	2023-07-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경제지주회사, 농협은행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정부 주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3-07-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3제10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자원(財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64조)	2023-07-21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지만 하면 해당 명의의 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주택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6월 1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은 5월 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고,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6월 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또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 물량을 내놓는 한편,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치러 취득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2023-07-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16조의2 신설)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 행위”라 함)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2023-07-1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되어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2023-07-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되고 있으나,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비공지 상태에 있다가 공지된 경우에는 공지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시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한정제공 데이터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제도적 균형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	2023-07-1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특허청장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2023-07-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협박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등)	2023-07-1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행정처분의 대상 등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및 제24조)	2023-07-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갯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갯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조항이나, 최근 갯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갯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써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2조)	2023-07-1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 체계로 적용되어 왔음 하지만 업종별·지역별 산업·노동·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따라 고용축소, 소득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향적용 지역의 시·도지사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소멸위기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최저임금액의 2배까지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임금수준 상향적용으로 인한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조의2 신설 등)	2023-07-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페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고형(固形) 연료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으며,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음 이렇듯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 안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 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5조의9 및 제25조의 16)	2023-07-20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 (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②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 (안 제29조의2제1항)	2023-07-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 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 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안 제29조의3제1항) ④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안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안 제82조, 안 제83조, 안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⑥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83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신설 등)	2023 07-20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7. 18)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법제사법위원회	• 「<u>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정부) 소송 당사자 등이 전자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기대 효과로는 소송 당사자 등이 공공·행정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소송 진행에 있어 각종 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u>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u>」(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대 효과로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있음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현재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없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필요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사와 계약 상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근거 마련 기대 효과로는 저작자와 출판사 등 계약당사자 간에 동일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공정한 출판문화 생태계를 도모하게 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공유자로 정의함에 따라 단독 소유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법령 해석상 혼선이 우려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사용률 등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기구 등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를 법인의 경우 납인자본금 등으로 명시 ②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변경 ③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④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의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기대 효과로는 ①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내여행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②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고 및 차별없는 관광활동 기회 확대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2023년 3월 30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등 도입을 취지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20928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19359호로 공포되었는바, 동 개정안은 이러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과 동일한 체계로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위탁받은 자가 판촉영업을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원위탁자에게 이를 고지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재위탁에 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 ④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관한 종사자가 판매질서에 관한 교육 이수 기대 효과로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등 도입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리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며, 그 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함 기대 효과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국민 혼란 해소 등이 있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하는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요건 완화 조치가 청소년 구직자(15세 17세)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병역의무 이행 중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장려금 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함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요건 완화 조치*를 받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청년으로 인정 *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재산요건은 4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환급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자, 근로장려금 환급자 등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 기대 등이 있음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7/27(목) 14:00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7/24(월)	「이달의 입법민원」(2023. 6월호) 발간	
	7/25(화)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 제19호 발간	
	7/28(금) 14:00	「국회 법제실-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도서관	7/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7호 발간 -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7/26(수)	금주의 서평 제638호 발간 - 도서명 : 운이란 무엇인가 - 저자 :스티븐 D. 헤일스	
	7/27(목)	「현안, 외국에선?」 제63호 발간 -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현황	
예산정책처	7/27(목)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7/27(목) 10:00	「NABO 정책현안 토론회」 대비 전문가 간담회 II 개최	의정관 505호
입법조사처	7/24(월)	「NARS 현안분석」 발간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별첨1] 제408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교육위	7/17(월) 10:00	전체회의	- 현안 질의, 법안 상정
환노위	7/26(수) 14:00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7/28(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현안질의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국토위	7/26(수) 10:00	전체회의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보고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4(월) 10:00	웹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미래 -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양향자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7/24(월) 10:00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 도 개선	윤호중·홍익표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24(월) 10:30	국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권성동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5(화) 10:00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5(화) 14:00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 -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가능한가?	위성곤·소병훈 의원실, 해양수산부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5(화) 15:00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7/25(화) 19:00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1차 - 地球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7/26(수) 14: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6 -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6(수) 14:00	소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법안 제정 전문가 토론회	김용판·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7/27(목) 13:30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정전 70년, 다시 평화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8(금) 10:00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 '경제 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유의동 의원실, 한국경제TV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호 뉴스레터(제19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6호 발간 -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7/19(수)	금주의 서평 제637호 발간 - 도서명 : 초거대 위협 - 저자:누리엘 루비니	
예산정책처	7/20(목)	「대한민국 경제」 발간	
입법조사처	7/17(월)	「이슈와 논점」 2116호 발간 -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	
	7/18(화)	「이슈와 논점」 2117호 발간 -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의와 향후 과제	
	7/19(수)	「이슈와 논점」 2118호 발간 -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7/19(수)	「외국 입법·정책 분석」 39호 발간 -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7/21(금)	「NARS 현안분석」 296호 발간 -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7(월) 10:00	<u>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u>	김성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7(월) 14:00	<u>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u>	박범계·조승래·박영순· 이상민·장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8(화) 14:00	<u>'AI 기술 활용' 기후예측 및 대응을 위한 토론회</u>	홍석준·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9(수) 14:00	<u>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프랜차이즈 지원 방안</u>	권철승 의원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7/20(목) 10:00	<u>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u>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의원회관 4간담회실
7/20(목) 14:00	<u>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u>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1(금) 14:00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u> -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및 해외 법제 사례	이용호·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 지난주 (7/17~7/23)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7/14(금)	지적재산권	<u>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 및 국가첨단산업법 관련 고시 제정</u>
7/20(목)	금융	<u>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최근 동향 및 업무 성공사례 소개</u>
7/21(금)	ESG	<u>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u>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